

包裝産業의 實態調查 및 發展方向 報告書 (拔萃) ②

資料提供 : 韓國包裝開發研究院

편집자주 : 이 『포장산업의 실태조사 및 발전방향 조사보고서』는 2000년 3월에 산업자원부가 조사 주관하고, 지류포장, 합성수지포장, 금속포장, 유리·도자기포장, 목재포장 등 소관 14개 중소기업협동조합·협회의 조사 참여 아래, 한국포장개발연구원 등이 주축적으로 조사 시행하여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조사 분석한 우리나라 초유(初有)의 통계법에 의거 승인 통계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발췌 게재합니다.

IV. 포장산업의 현황

I. 포장산업총괄

가. 사업체수

1) 사업체수 현황

- 1998년 현재 포장산업의 사업체수는 총 3,902개 업체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보면 지류포장공업 1,640개 업체, 합성수지포장공업 1,745개 업체, 금속포장공업 124개 업체, 유리·도자기포장공업 50개 업체(도자기포장업체 1부 누락), 목재포장공업 230개 업체, 포장기계공업 113개 업체 등으로 나타남.
- 포장산업의 사업체수 변화 추이를 보면 1994년에 총 4,187개 업체에서 1998년에는 총 3,902개 업체로 감소하여 '94~'98년간 연평균 1.7%가 감소하였으며, 업종별로 보면 목재포장업체수는 '94~'98년간 연평균 1.7%가 감소하였으며, 업종별로 보면 목재포장업체수는 '94~'98년간 연평균 4.3%가 증가한 반면, 그 외 업종의 업체수는 감소하였으며, 특히 포장기계업체수는 동기간 중 연평균 4.3%가 감소하여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포장산업의 사업체수 현황 (단위 : 개, %)

업종명	1994	1995	1996	1997	1998	연평균 증감률
지류포장공업	1,886	1,926	1,976	1,893	1,640	-3.4
합성수지포장공업	1,778	1,811	2,000	2,082	1,745	-0.5
금속포장공업	133	136	158	139	124	-1.7
유리, 도자기포장공업	58	49	60	53	50	-3.6
목재포장공업	194	226	238	247	230	4.3
포장기계공업	138	144	158	154	113	-4.9
계	4,187	4,292	4,590	4,568	3,902	-1.7

자 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5~1998
 통계청, 산업총조사보고서, 1999

2) 지역별 업체수 분포

○ 1998년 기준 포장산업의 지역별 업체수 분포를 보면 경기도 40.6%, 부산 8.7%, 인천 7.5%, 서울 7.2%, 경남 7.1%, 경북 5.3%, 대구 5.0%, 충남 4.4%, 충북 4.3%, 전남 2.9%, 전북 1.9%, 대전 1.4%, 광주 1.2%, 울산 0.9, 강원 0.9%, 제주 0.5%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업체들이 경기도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2 >

포장산업의 지역별 업체수 분포 (1998)

(단위 : 개, %)

지역별	지류 포장	%	합성 수지	%	금속 공업	%	유리 도기	%	목재	%	포장 기계	%	합계	%
서울	149	8.5	119	5.9	2	2.9	1	1.8	9	3.1	34	219.7	314	7.2
부산	160	9.2	173	8.6	4	5.8	2	3.6	26	9.1	14	98.1	379	8.7
대구	109	9.2	173	8.6	4	1.4	0	0.0	10	3.5	18	10.4	217	5.0
인천	107	6.1	129	6.4	8	11.6	5	9.1	64	22.3	10	5.8	324	7.5
광주	16	0.9	32	1.6	0	0.0	0	0.0	3	1.0	1	0.6	52	1.2
대전	21	1.2	27	1.3	1	1.4	0	0.0	8	2.8	3	1.7	62	1.4
울산	4	0.2	25	1.2	1	1.4	0	0.0	8	2.8	3	1.7	41	0.9
경기	713	40.9	856	42.7	26	37.7	34	61.8	60	20.9	69	39.9	1,760	40.6
강원	20	1.1	18	0.9	0	0.0	0	0.0	3	1.0	0	0.0	41	0.9
충북	73	4.2	102	5.1	3	4.3	2	3.6	6	2.1	1	0.6	187	4.3
충남	67	3.8	90	4.5	11	15.9	7	12.7	14	.9	2	1.2	91	4.4
전북	31	1.8	47	2.3	1	1.4	1	1.8	3	1.0	0	0.0	3	1.9
전남	59	3.4	53	2.3	1	1.4	0	0.0	11	3.8	0	0.0	124	2.9
경북	89	5.1	114	5.7	3	4.3	2	3.6	20	7.0	3	1.7	231	5.3
경남	122	7.0	127	6.3	7	10.1	1	1.8	37	12.9	14	8.1	308	7.1
제주	5	0.3	13	0.6	0	0.0	0	0.0	3	0	1	0.6	22	0.5
계	1,745	100.0	2,004	100.0	69	100.0	55	100.0	287	100.0	173	100.0	4,338	100.0

자 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5~1998
 통계청, 산업총조사보고서, 1999

나. 월평균 종사자수

1) 월평균 종사자수 현황

- 1998년 현재 포장산업의 월평균 종사자수는 총 78,021명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보면 지류포장공업 29,534명, 합성수지포장공업 35,114명, 금속고장공업 5,383명, 유리·도자기포장공업 2,947명, 목재포장공업 3,474명, 포장기계공업 1,569명 등으로 나타남.
- 포장산업의 월평균 종사자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에 총 97,590명에서 1998년에는 총 78,021명으로 감소하여 '94~'98년간 연평균 5.4%가 감소하였으며, 업종별로 보면 유리, 도자기포장공업의 월평균 종사자수가 '94~'98년간 연평균 16.0%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포장기계공업이 같은 기간 중 연평균 12.6%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음.

< 표 3 >

포장산업의 월평균 종사자수 현황

(단위 : 명, %)

업종명	1994	1995	1996	1997	1998	연평균증감율
지류포장공업	38,718	39,830	38,503	34,699	29,534	-6.5
합성수지포장공업	39,822	38,588	41,635	40,865	35,114	-3.1
금속포장공업	7,098	7,189	7,279	6,103	5,383	-6.7
유리·도자기포장공업	5,922	4,718	5,098	4,472	2,947	-16.0
목재포장공업	3,345	3,793	3,538	3,838	3,474	1.0
포장기계공업	2,685	3,446	2,839	2,246	1,569	-12.6
계	97,590	97,564	98,879	92,223	78,021	-5.4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5~1998
 통계청, 산업총조사보고서, 1999

2) 업체당 월평균 종사자수

- 1998년 현재 포장산업 전체의 업체당 월평균 종사자수는 20명으로 분석되었으며, 업종별 업체당 월평균 종사자수는 유리·도자기포장공업 59명, 금속포장공업 43명, 합성수지포장공업 20명, 지류포장공업 18명, 목재포장공업 15명, 포장기계공업 14명 순으로 나타남
- 포장산업 전체의 업체당 월평균 종사자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에 23명에서 1998년에는 20명으로 감소하여 '94~'98년간 연평균 3.4%가 감소하였고, 업종별로 보면 유리, 도자기포장공업의 업체당 월평균 종사자수가 '94~'98년간 연평균 12.8%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포장기계공업이 같은 기간 중 연평균 8.5%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음.

< 표 4 >

포장산업의 업체당 월평균 종사자수 현황

(단위 : 명, %)

업종명	1994	1995	1996	1997	1998	연평균증감율
지류포장공업	21	21	19	18	18	-3.8
합성수지포장공업	22	21	21	20	20	-2.4
금속포장공업	53	53	46	44	43	-5.1
유리·도자기포장공업	102	96	85	84	59	-12.8
목재포장공업	17	17	15	15	15	-3.1
포장기계공업	20	24	18	15	14	-8.5
포장산업 전체평균	23	23	22	20	20	-3.4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5~1998
통계청, 산업총조사보고서, 1999

다. 생산액

1) 생산액 현황

- 1998년 현재 포장산업의 생산액은 총 10,274,566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보면 지류포장공업 4,326,181백만원, 합성수지포장공업 4,195,456백만원, 금속포장공업 935,190백만원, 유리·도자기포장공업 382,110백만원, 목재포장공업 317,659백만원, 포장기계공업 117,970백만원등으로 나타남.
- 포장산업의 생산액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에 총 8,358,795백만원에 1998년에는 총 10,274,566백만원으로 증가하여 '94~'98년간 연평균 10.8%, 합성수지포장공업은 7.3% 지류포장공업은 5.1%, 금속포장공업은 3.2%, 증가하였으나, 포장기계공업의 생산액은 같은 기간 중 연평균 9.9%, 유리, 도자기포장공업은 3.3% 감소하였음.

< 표 5 >

포장산업의 생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업종명	1994	1995	1996	1997	1998	연평균증감율
지류포장공업	3,546,263	4,476,090	4,294,447	4,23,008	4,326,181	5.1
합성수지포장공업	3,163,238	3,540,914	4,260,391	4,58,499	4,195,456	7.3
금속포장공업	823,831	915,842	1,038,041	975,103	935,190	3.2
유리·도자기포장공업	436,335	423,308	450,956	437,981	382,110	-3.3
목재포장공업	210,459	269,961	261,311	324,740	317,659	10.8
포장기계공업	178,659	334,948	255,941	237,185	117,970	-9.9
계	8,358,795	9,961,063	10,561,087	10,864,516	10,274,566	5.3

자 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5~1998
 통계청, 산업총조사보고서, 1999

2) 업체당 생산액

- 1998년 현재 포장산업 전체의 업체당 생산액은 2,633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보면 지류포장공업 2,638백만원, 합성수지포장공업 2,404백만원, 금속포장공업 7,542백만원, 유리·도자기포장공업 7,642백만원, 목재포장공업 1,381백만원, 포장기계공업 1,044백만원 등으로 나타남.
- 1998년 현재 포장산업 전체의 업체당 생산액(2,633백만원)은 제조업 전체의 업체당 생산액(5,343백만원)의 49.3% 수준이며, 제조업 전체 중소기업의 업체당 생산액(2,495백만원)의 1.06배 수준임.
- 포장산업 전체의 업체당 생산액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에 1,996백만원에서 1998년에는 2,633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 보면 지류포장공업의 업체당 생산액은 '94~'98년간 연평균 8.8%, 합성수지포장공업은 7.8%, 목재포장공업은 6.2%, 금속포장공업은 5.5%, 유리, 도자기포장공업은 0.4% 증가하였으나, 포장기계공업의 업체당 생산액은 같은 기간중 연평균 5.2% 감소하였음.

< 표 6 >

포장산업의 업체당 생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업종명	1994	1995	1996	1997	1998	연평균증감율
지류포장공업	1,880	2,324	2,173	2,235	2,263	8.8
합성수지포장공업	1,779	1,955	2,130	2,238	2,404	7.8
금속포장공업	6,194	6,734	6,570	7,015	7,542	5.0
유리·도기포장공업	7,523	8,639	7,516	8,264	7,642	0.4
목재포장공업	1,085	1,195	1,098	1,315	1,381	6.2
포장기계공업	1,295	2,326	1,620	1,540	1,044	-5.2
계	1,996	2,321	2,301	2,378	2,633	7.2

자 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5~1998
 통계청, 산업총조사보고서, 1999

3) 종업원 1인당 생산액

- 1998년 현재 포장산업 전체의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은 132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보면 지류포장공업 146백만원, 합성수지포장공업 119백만원, 금속포장공업 174백만원, 유리·도자기포장공업 130백만원, 목재포장공업 91백만원, 포장기계공업 75백만원등으로 나타남.

- 1998년 현재포장산업 전체의 종업원 1인당 생산액(132백만원)은 제조업 전체의 종업원 1인당 생산액 183백만원)의 72.1% 수준이며, 제조업 전체 중소기업의 종업원 1인당 생산액 (120백만원)의 1.1배 수준임.
- 포장산업 전체의 종업원 1인당 생산액 변환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에 86백만원에서 1998년에는 132백만으로 증가하여 '94~'98년간 연평균 11.4%가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 보면 유리, 도자기포장공업의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은 '94~'98년간 연평균 15.2%, 지류포장공업은 12.5%, 합성수지포장공업은 10.7%, 금속포장공업은 10.6%, 목재포장공업은 9.8%, 포장기계공업은 3.1%가 각각 증가하였음.

< 표 7 >

포장산업의 종업원 1인당 생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업종명	1994	1995	1996	1997	1998	연평균증감율
지류포장공업	92	112	112	122	146	12.5
합성수지포장공업	79	92	103	114	119	10.7
금속포장공업	116	127	143	160	174	10.6
유리·도자기포장공업	74	90	88	98	130	15.2
목재포장공업	63	71	74	85	91	9.8
포장기계공업	67	97	90	106	75	3.1
포장산업 전체평균	86	102	107	118	132	11.4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5~1998
 통계청, 산업총조사보고서, 1999

라. 부가가치

1) 부가가치 현황

- 1998년 현재포장산업의 부가가치는 총 4,363,603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보면 지류포장공업 1,733,554백만원, 합성수지포장공업 1,805,346백만원, 금속포장공업 397,017백만원, 유리·도자기포장공업 244,962백만원, 목재포장공업 125,069백만원, 포장기계공업 57,655백만원 등으로 나타남
- 포장산업의 부가가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에 총 3,600,107백만원에서 1998년에는 총 4,363,603백만원으로 증가하여 '94~'98년간 연평균 4.9%가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 보면 목재포장공업의 부가가치는 '94~'98년간 연평균 10.0%, 합성수지포장공업은 6.2%, 지류포장공업은 5.3%, 금속포장공업은 4.7%, 증가하였으나, 포장기계공업의 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중 연평균 7.7%, 유리, 도자기포장공업은 3.0% 감소하였음.

< 표 8 >

포장산업의 부가가치 현황

(단위 : 백만원, %)

업종명	1994	1995	1996	1997	1998	연평균증감율
지류포장공업	1,408,286	1,672,076	1,685,501	1,649,340	1,733,554	5.3
합성수지포장공업	1,419,536	1,537,501	1,788,263	1,956,486	1,805,346	6.2
금속포장공업	329,942	371,816	423,343	409,162	397,017	4.7
유리·도자기포장공업	277,195	276,694	296,788	277,195	244,962	-3.0
목재포장공업	85,573	107,954	112,692	132,521	125,069	10.0
포장기계공업	79,575	121,278	115,769	106,867	57,655	-7.7
계	3,600,107	4,087,319	4,422,356	4,531,571	4,363,603	4.9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5~1998
 통계청, 산업총조사보고서, 1999

2) 업체당 부가가치

- 1998년 현재 포장산업 전체의 업체당 부가가치는 1,118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보면 지류포장공업 3,202백만원, 유리·도기포장공업 4,899백만원, 목재포장공업 544백만원, 포장기계공업 510백만원 등으로 나타남.
- 1998년 현재 포장산업 전체의 업체당 부가가치(1,118백만원)는 제조업 전체의 업체당 부가가치(2,222백만원)의 50.3% 수준이며, 제조업 전체 중소기업의 업체당 부가가치(1,076백만원)의 1.04배 수준임.
- 포장산업 전체의 업체당 부가가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에 860백만원에서 1998년에는 1,118백만원으로 증가하여 '94~'98년간 연평균 6.8%가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 보면 지류포장공업의 업체당 부가가치는 '94~'98년간 연평균 9.1%, 합성수지포장공업은 6.7%, 금속포장공업은 6.6%, 목재포장공업은 5.4%, 유리, 도자기포장공업은 0.6% 증가하였으나, 포장기계공업의 업체당 부가가치는 같은 기간 중 연평균 3.0% 감소하였음.

< 표 9 >

포장산업의 업체당 부가가치 현황

(단위 : 백만원, %)

업종명	1994	1995	1996	1997	1998	연평균증감율
지류포장공업	747	868	853	871	1,057	9.1
합성수지포장공업	798	849	894	940	1,035	6.7
금속포장공업	2,481	2,734	2,679	2,944	3,202	6.6
유리·도자기포장공업	4,779	5,647	4,946	5,230	4,899	0.6
목재포장공업	441	478	473	537	544	5.4
포장기계공업	577	842	733	694	510	-3.0
포장산업 전체 평균	860	952	963	992	1,118	6.8

자 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5~1998
 통계청, 산업총조사보고서, 1999

3)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 1998년 현재 포장산업 전체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56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보면 지류포장공업 59백만원, 합성수지포장공업 51백만원, 금속포장공업 74백만원, 유리·도자기포장공업 83백만원, 목재포장공업 36백만원, 포장기계공업 37백만원 등으로 나타남.
- 1998년 현재 포장산업 전체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56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보면 지류포장공업 59백만원, 합성수지포장공업 51백만원, 금속포장공업 74백만원, 유리·도자기포장공업 83백만원, 목재포장공업 36백만원, 포장기계공업 37백만원 등으로 나타남.
- 1998년 현재 포장산업 전체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56백만원)는 제조업전체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76백만원)의 73.7% 수준이며, 제조업 전체 중소기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52백만원)의 1.08배 수준임.
- 포장산업 전체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에 37백만원에서 1998년에는 56백만원으로 증가하여 '94~'98년간 연평균 11.0%가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 보면 유리, 도자기포장공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94~'98년간 연평균 15.4%, 지류포장공업은 12.7%, 금속포장공업은 12.2%, 합성수지포장공업은 9.6%, 목재포장공업은 8.9%, 포장기계공업은 5.5%가 각각 증가하였음.

< 표 9 >

포장산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치 현황

(단위 : 백만원, %)

업 종 명	1994	1995	1996	1997	1998	연평균증감율
지류포장공업	36	42	44	48	59	12.7
합성수지포장공업	36	40	43	48	51	9.6
금속포장공업	46	52	58	67	74	12.2
유리·도자기포장공업	47	59	58	62	83	15.4
목재포장공업	26	28	32	35	36	8.9
포장기계공업	30	35	41	48	37	5.5
포장산업 전체 평균	37	42	45	49	56	11.0

자 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5~1998
 통계청, 산업총조사보고서, 1999

국내외 포장산업 관련 규제동향

1. 국내 포장산업 관련 규제동향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 법률 공포 '99. 2. 8 시행 '99. 8. 9)

-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 재질에 관한 검사 신설(법률 제15조 제2항)
-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표시 신설(법률 제15조 제3항)
- 1회용품 사용자제 권고사항 삭제, 사업자의 강제 이행(법률 제15조 제4항)

나. 동 법률 시행령 개정(개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99. 12. 31)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의 확대(시행령 제12조)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음식점, 주점)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와 매장면적 33㎡ 이상인 도·소매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1회용품 사용억제 이행명령 기간 단축(시행령 제13조)
 - 기존 6개월 → 개정 3개월
- 폐기물 부담금 대상 품목 조정(시행령 제17조)
- 우수재활용 지정사업자의 지정 및 우선 지원 신설(시행령 제29조의 2)
-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기관 확대(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확대
 - 물품 구입 또는 건축·토목공사시 재활용제품 사용 확대 노력

다. 동 법률 시행규칙 개정(개정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99. 2. 22)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체 확대 등(시행규칙 제3조의 2)
 - 모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는 1회용 컵·접시·용기·수저·포크·ナイ프,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만든 것 제외)의 사용자제
 -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33㎡ 이상인 판매업 중 165㎡ 이상인 영업장은 1회용 봉투 또는 쇼핑백 무상 제공 억제(유상판매, 환불제, 쿠폰제 중 선택), 33~165㎡ 영업장은 1회용 봉투 또는 쇼핑백 사용억제

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개정 규칙 공포 및 '99. 2. 19)

- 1개의 환경부령과 2개의 환경부 고시를 통합 개정
 -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지침(2) PVC 수축포장재의 제한적 사용(규칙 제5조 제2항) : 2000년 1월부터 시행
 - 석유제품, 의약품, 동물류 및 식용유, 화공약품 및 농약, 냉동제품의 대체 포장시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
- 제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강화(규칙 제4조 제1항)
- 합성수지 재질 및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 강화 (규칙 제5조의 2)

- 대상 제품 및 포장재의 감량화 목표율 : 계란 난좌 및 팩, 식품포장반침접시 등의 감량화를 상향조정)
- 재활용단체의 설립 : 제조자 및 포장재 생산자 등이 공동 구성, 제품에 재활용사업 공동참여 표시 가능, 재활용단체는 환경부장관이 지정
-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 재질 완충재 연차별 감량(규칙 제9조 1항)
 - 감량화 목표율은 현행과 동일 : 대기업은 1999년 10%, 2000년 30%, 2002년 이후 50%이상, 중소기업은 1999년 10%, 2000년 20%, 2002년 이후 30%이상('94년 사용량 기준)

마. 법 규정의 세부 설명

1)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및 규제 내용

- 대상사업장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예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집단급식소(상시 1회 50인 이상)
- 규제품목 : 1회용컵, 접시, 용기, 수저, 포크, 나이프,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합성수지, 광고 선전물
- 규제제외 : 고객이 가져오거나 외부배달로 판매하는 경우, 장기 유통을 위한 밀봉포장 및 분해성 합성수지로 만든 제품
- 반침접시에 음식물을 담아 랩으로 포장한 것은 판매 가능

2)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방법의 변경

- 개정된 관련 법률의 시행기관인 '99. 8. 8 까지 : 1차 위반시 권고, 2차 위반시 이행명령 3개월, 3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99. 8. 9 이후 : 1차 위반시 3개월 이행명령 ,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3) 1회용품 사용억제 시책

- 포장폐기물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제도 개요
 - 과대포장 규제 ;
 - 식품류/화장품류/잡화류/종합제품류 등의 포장공간비율(10~35%) 및 포장횟수(2차이내)를 규제
 - 포장검사명령제('99. 8. 9부터 시행)
 - 포장표시권장제('99. 8. 9부터 시행)
 - 포장재의 제질 규제 ;
 -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 사용권고
 -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수축포장 또는 도포한 포장재의 사용 금지
 -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 포장시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의 사용금지
 - 포장용기의 재사용(리필제품 생산권고) ;
 - 화장품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10%
 - 샴푸·린스류 20%
 - 분말커피류 10%

- 크레용·크레파스·물감 10%
- 합성수지포장재·완충재 감량화 ;
- < 표 1 > ·용적이 30,000cm²이상인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에어컨디셔너, 퍼스널컴퓨터 (모니터를 포함한다)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사용물 연차별로 감량토록 의무화

○ 과대포장규제

-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품포장시 제품내용물과 외포장 사이의 공간비율, 포장횟수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절약을 유도함.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제 품 의 종 류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식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1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2차 이내
	건강·기호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화장품(세제류 포함)	10%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허리띠)	30% 이하	2차 이내
의약부외품	위약부외품	20% 이하	2차 이내
의 류	와이셔츠·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세제류 포함), 신변잡화류	25% 이하	2차 이내

자 료 : 환경부

< 편집자주 >

○ 합성수지포장재의 감량화는 5호에 실립니다.

< 계 속 >